

⑥ 2016년 메뉴얼

FAQ (3)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변경 가능 여부

Q1 연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과제를 위해 채용한 인력이 퇴사하여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계획하였던 신규채용을 못하였거나 퇴사한 경우 계획되어 있던 인건비는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세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없이 타 세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인정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연구원이 퇴사후 다른 신규직원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및 정산시 고용계약서 반드시 제출)

Q2 중소기업 인건비 중 현금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인건비 총액인지 궁금합니다.

A2 인건비 총액을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승인 받아야 합니다.

FAQ (4)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Q1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중소기업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우리 국토교통부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건비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여율도 100%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은 과제 협약일 이후 인건비 지급을 의미합니다. 과제수행중에도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중액시 승인사항은 아니고, 감액시만 승인사항입니다.